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8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5751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

원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A 주식회사

[redacted]

피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4구합68737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1. 11.

판 결 선 고 2019. 2. 8.

주 문

1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8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7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4,567,410원, 농어촌특별세 37,389,730원, 지방교육세 74,779,890원, 가산세 104,684,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[원고]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7. 2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14,567,410원, 농어촌특별세 37,389,730원, 지방교육세 74,779,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[피고]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직권으로 판단한다.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
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8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,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재영

판사 신숙희

판사 이승철